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1
----------	------

제출년월일 : 2013. 12.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공사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관리를 위해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와 대행원가계산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안 제9호) : 구체화함
- 다량폐기물(안 제11호) : 신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확대(안 제3조제5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

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방법 추가(안 제3조제5항과 제6항)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사전공고 등을 통한 업체선정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마. 대행업자 평가 조항 구체화(제6조제5항 삭제 후 제6조의2 신설)

- 평가기준, 평가 횟수, 준용, 평가 결과 등 공개, 평가위탁, 평가 후 조치 등

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사. 다량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안 별표 4)

–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마을단위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한 폐기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3. 10. 17 ~ 11. 6)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완료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과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1.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유쓰레기,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마을단위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방법을 따르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시장이 운영하는 처리 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배출 신고사항을

- 폐기물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폐기물 배출자는 제11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주민의 편의 증진에 필요하면 제25조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대행 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 관리원의 근무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평가 후 적용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한다.
- ⑥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를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9조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원가계산 사항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량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다량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단위	금 액(원)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부 쓰 래 유 기	톤 (m ³)	117,800 (23,560)	50,000 (10,000)	67,800 (13,560)	
공 사 장 생 활 폐 기 물	톤	104,000		104,000	가연성만 해당함
사 업 장 생 활 폐 기 물	톤	104,000		104,000	가연성만 해당함
마 을 단 위 종 중 량 제	톤	15,000		15,000	

※ 총중량 1톤 미만의 폐기물은 1톤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3조제6항 관련)				처리기간 즉시
배출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배출내용	종류	배출량		
	배출장소	배출일자		
운반구분	청소차(), 배출자(), 그 밖에()	차량번호		
배출사유				
수수료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다량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관리번호 제 호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배출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배출내용	종류	배출량		
	배출장소	배출일자		
운반구분	청소차(), 배출자(), 그 밖에()	차량번호		
수수료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다량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다양생활폐기物 처리 대장(제3조제6항 관련)

일련 번호	신고일	신고자		배출량 (톤)	운반 구분	차량 번호	수수료 (원)	배출 일자	배출사유	결재		
		성명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과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유쓰레기, 공사장생활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마을 단위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생 략)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현 행	개 정 안
<u>할 수 있다.</u>	<p><u>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 방법을 따르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u></p> <p><u>1.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한다)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에게 위탁</u></p> <p><u>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에게 위탁</u></p> <p><u>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 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를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1호서식에 의거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단, 가연성 폐기물은 제1항과 같이 배출할 수 있다.</u></p> <p><u>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u></p>
	<u><삭 제></u>

현 행	개 정 안
<p>규정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p> <p>⑧ (생 략)</p> <p>⑨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장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현행 제8항과 같음)</p> <p>⑧ 폐기물 배출자는 제1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p> <p>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p> <p>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주민의 편의 증진에 필요하면 제25조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다.</p>
<p>② ~ ④ (생 략)</p> <p>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 및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 사업구역 및 사업량 등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신 설></p>	<p>제6조의2(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p>

현 행	개 정 안
	<p>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대행 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근무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평가 후 적용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p> <p>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 폐기물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한다.</p> <p>⑥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를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신 설>	<p>제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p>

현 행	개 정 안
	<p>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원가계산 사항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 ③(생 략)</p> <p>④ 부유쓰레기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p> <p>⑤ (생 략)</p>	<p>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다량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놔물 등 비리혐의로 7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놔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3.7.19>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 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생략

2. 생략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 4) 생략

다. ~ 라. 생략

4. ~ 6. 생략